|  |  |  |
| --- | --- | --- |
| **국무원 판공청의****자유무역시험구내 외국인투자에 대한 국가안전심사 시행방법 인쇄발부에 관한 통지**국판발[2015]24호각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국무원 각 부처와 직속기구:국무원의 동의를 거쳐 <자유무역시험구내 외국인투자에 대한 국가안전심사 시행방법>을 인쇄발부하는 바이며 확실하게 관철하고 집행하기 바란다.국무원 판공청2015년 4월 8일중국(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 중국(광둥)자유무역시험구, 중국(톈진)자유무역시험구, 중국(푸젠)자유무역시험구 등 자유무역시험구(이하 '자유무역시험구'로 통칭)의 대외개방 사업을 확실하게 추진하고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모델과 맞물리는 외국인투자 국가안전심사(이하 '안전심사'로 약칭) 조치를 시범실시하여 외국인투자의 질서있는 발전을 유도하고 국가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방법을 제정한다.1. 심사범위국가안전, 국가안전 보장능력에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민감한 투자주체, 민감한 인수합병 대상, 민감한 업종, 민감한 기술, 민감한 지역과 연관된 외국인투자에 대해 안전심사를 진행하는 것을 총체적인 원칙으로 한다.(1) 안전심사의 범위: 외국투자자가 자유무역시험구 내에서 군수 산업, 군수 부대산업 및 기타 국방안전 관련 분야와 중점·민감 군사시설 주변 지역에 투자하는 경우; 외국투자자가 자유무역시험구 내에서 국가안전과 연관된 중요한 농산품, 중요한 에너지와 자원, 중요한 기초시설, 중요한 운송 서비스, 중요한 문화, 중요한 정보기술 제품과 서비스, 핵심 기술, 중대장비 제조 등 분야에 투자하고 투자대상기업의 실제 통제권을 취득하는 경우.(2) 외국투자자의 자유무역시험구내 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포함한다.ㄱ. 외국투자자가 단독으로 또는 기타 투자자와 공동으로 신설 프로젝트에 투자하거나 기업을 설립하는 경우.ㄴ. 외국투자자가 인수합병의 방식으로 기존 기업의 지분 또는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ㄷ. 외국투자자가 계약에 의한 통제, 주주명의 대여, 신탁, 재투자, 해외거래, 임대차, 전환사채 매입 등 방식으로 투자하는 경우.(3) 외국투자자의 투자대상기업에 대한 실제 통제권 취득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포함한다.ㄱ. 외국투자자 및 그 관계투자자가 기업 지분총액의 50%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ㄴ.여러명의 외국투자자가 보유한 기업 지분율 합계가 50% 이상인 경우.ㄷ. 외국투자자 및 그 관계투자자, 여러명의 외국투자자가 보유한 지분율 합계가 50%를 초과하지 아니하나 보유한 표결권으로 주주회의 또는 주주총회, 이사회의 결의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4) 기업의 경영의사결정, 인사, 재무, 기술 등에 대한 외국투자자의 중대한 영향력 확보를 초래할 수 있는 경우.2. 심사내용(1) 외국인투자가 국방에 필요로 하는 국내 제품의 생산능력, 국내 서비스의 제공능력 및 관련시설을 포함한 국방안전에 미치는 영향.(2) 외국인투자가 국가 경제 운영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3) 외국인투자가 사회 기본 생활질서에 미치는 영향.(4) 외국인투자가 국가의 문화안전, 공중도덕에 미치는 영향.(5) 외국인투자가 국가의 사이버 안전에 미치는 영향.(6) 외국인투자가 국가안전과 연관된 핵심기술의 연구개발 능력에 미치는 영향.3. 안전심사 업무 매커니즘과 절차(1) 자유무역시험구내 외국인투자에 대한 구체적인 안전심사 업무는 외국투자자 국내기업 인수합병 안전심사 관계부서 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로 약칭)가 담당한다. 연석회의 매커니즘 하에서 국가발전개혁위, 상무부는 외국인투자와 연관된 분야에 근거하여 관련 부서와 공동으로 안전심사를 실시한다.(2) 자유무역시험구 안전심사 절차는 <외국투자자의 국내기업 인수합병에 대한 안전심사제도 수립에 관한 국무원 판공청의 통지>(국판발[2011]6호) 제4호에 따른다.(3) 국가안전에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지만 조건 부가를 통해 영향을 제거할 수 있는 투자의 경우 연석회의는 외국투자자에게 투자방안 변경 확약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외국투자자가 확약서를 제출한 후 연석회의는 조건부 심사의견을 내놓을 수 있다.(4) 자유무역시험구 관리기구는 직책 범위 내에서 외국인투자 신고(備案), 심사비준 또는 심사 수속 처리 시 외국인투자가 안전심사 대상 범위에 해당되는 경우 안전심사 신청을 제출해야 함을 외국인투자에게 적시에 고지해야 하고 관련 수속을 일시적으로 중지해야 한다.(5) 상무부는 연석회의의 심사의견을 외국투자자에게 서면고지함과 더불어 자유무역시험구 관리기구에 통보해야 한다. 국가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조건 부가 후 국가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외국인투자의 경우 자유무역시험구 관리기구는 관련 수속을 계속하여 처리한다. (6) 자유무역시험구 관리기구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독관리 업무를 확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외국인투자자가 허위정보를 제공하였거나 실질적인 정보를 누락시켰거나 안전심사 통과 후 투자활동을 변경하였거나 부가조건을 위반함으로써 국가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거나 국가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이 발견된 경우 외국인투자에 대한 안전심사가 이미 끝났다거나 투자가 이미 실시된 후라 할지라도 자유무역시험구 관리기구는 이를 국가발전개혁위 및 상무부에 보고해야 한다.(7) 국가발전개혁위, 상무부 및 자유무역시험구 관리기구는 정보화 수단을 이용하여 정보 공유, 실시간 모니터링, 동적 관리 및 정기 검사 등 면의 연동 매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4. 기타 규정(1) 외국투자자가 투자한 지분투자기업, 창업투자기업, 투자성회사의 자유무역시험구내 투자는 이 방법의 관할을 받는다.(2) 금융 분야 외국인투자에 대한 안전심사는 별도로 규정한다.(3)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 타이완 지역 투자자의 투자는 이 방법의 규정을 참조하여 집행한다.(4) 이 방법은 국가발전개혁위, 상무부가 책임지고 해석한다.(5) 이 방법은 인쇄발부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실시한다.  |  | **国务院办公厅****关于印发自由贸易试验区外商投资国家安全审查试行办法的通知**国办发〔2015〕24号各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国务院各部委、各直属机构：　　《自由贸易试验区外商投资国家安全审查试行办法》已经国务院同意，现印发给你们，请认真贯彻执行。　　　　　　　　　　　　　　　　　国务院办公厅2015年4月8日　　为做好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中国（广东）自由贸易试验区、中国（天津）自由贸易试验区、中国（福建）自由贸易试验区等自由贸易试验区（以下统称自贸试验区）对外开放工作，试点实施与负面清单管理模式相适应的外商投资国家安全审查（以下简称安全审查）措施，引导外商投资有序发展，维护国家安全，制定本办法。　　一、审查范围　　总的原则是，对影响或可能影响国家安全、国家安全保障能力，涉及敏感投资主体、敏感并购对象、敏感行业、敏感技术、敏感地域的外商投资进行安全审查。　　（一）安全审查范围为：外国投资者在自贸试验区内投资军工、军工配套和其他关系国防安全的领域，以及重点、敏感军事设施周边地域；外国投资者在自贸试验区内投资关系国家安全的重要农产品、重要能源和资源、重要基础设施、重要运输服务、重要文化、重要信息技术产品和服务、关键技术、重大装备制造等领域，并取得所投资企业的实际控制权。　　（二）外国投资者在自贸试验区内投资，包括下列情形：　　1.外国投资者单独或与其他投资者共同投资新建项目或设立企业。　　2.外国投资者通过并购方式取得已设立企业的股权或资产。　　3.外国投资者通过协议控制、代持、信托、再投资、境外交易、租赁、认购可转换债券等方式投资。　　（三）外国投资者取得所投资企业的实际控制权，包括下列情形：　　1.外国投资者及其关联投资者持有企业股份总额在50%以上。　　2.数个外国投资者持有企业股份总额合计在50%以上。　　3.外国投资者及其关联投资者、数个外国投资者持有企业股份总额不超过50%，但所享有的表决权已足以对股东会或股东大会、董事会的决议产生重大影响。　　4.其他导致外国投资者对企业的经营决策、人事、财务、技术等产生重大影响的情形。　　二、审查内容　　（一）外商投资对国防安全，包括对国防需要的国内产品生产能力、国内服务提供能力和有关设施的影响。　　（二）外商投资对国家经济稳定运行的影响。　　（三）外商投资对社会基本生活秩序的影响。　　（四）外商投资对国家文化安全、公共道德的影响。　　（五）外商投资对国家网络安全的影响。　　（六）外商投资对涉及国家安全关键技术研发能力的影响。　　三、安全审查工作机制和程序　　（一）自贸试验区外商投资安全审查工作，由外国投资者并购境内企业安全审查部际联席会议(以下简称联席会议)具体承担。在联席会议机制下，国家发展改革委、商务部根据外商投资涉及的领域，会同相关部门开展安全审查。　　（二）自贸试验区安全审查程序依照《国务院办公厅关于建立外国投资者并购境内企业安全审查制度的通知》（国办发〔2011〕6号）第四条办理。　　（三）对影响或可能影响国家安全，但通过附加条件能够消除影响的投资，联席会议可要求外国投资者出具修改投资方案的书面承诺。外国投资者出具书面承诺后，联席会议可作出附加条件的审查意见。　　（四）自贸试验区管理机构在办理职能范围内外商投资备案、核准或审核手续时，对属于安全审查范围的外商投资，应及时告知外国投资者提出安全审查申请，并暂停办理相关手续。　　（五）商务部将联席会议审查意见书面通知外国投资者的同时，通知自贸试验区管理机构。对不影响国家安全或附加条件后不影响国家安全的外商投资，自贸试验区管理机构继续办理相关手续。　　（六）自贸试验区管理机构应做好外商投资监管工作。如发现外国投资者提供虚假信息、遗漏实质信息、通过安全审查后变更投资活动或违背附加条件，对国家安全造成或可能造成重大影响的，即使外商投资安全审查已结束或投资已实施，自贸试验区管理机构应向国家发展改革委和商务部报告。　　（七）国家发展改革委、商务部与自贸试验区管理机构通过信息化手段，在信息共享、实时监测、动态管理和定期核查等方面形成联动机制。　　四、其他规定　　（一）外商投资股权投资企业、创业投资企业、投资性公司在自贸试验区内投资，适用本办法。　　（二）外商投资金融领域的安全审查另行规定。　　（三）香港特别行政区、澳门特别行政区、台湾地区的投资者进行投资，参照本办法的规定执行。　　（四）本办法由国家发展改革委、商务部负责解释。　　（五）本办法自印发之日起30日后实施。 |